

국어의 양태 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이선웅*

1. 머리말

현대국어 문법에서 서법(敍法)과 양태(樣態)¹⁾의 개념이 얼굴을 내비친 지 적잖은 시간이 흘렀지만, 관련 논의들에서 어떤 공통된 서술의 흐름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두 범주를 체계적으로 하위 분류한 논의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이 두 용어는 함께 나타난 것도 아니고 비교적 일찍부터 쓰였던 ‘서법’에 비해 ‘양태’는 70년대에 와서야 안정적으로 사용된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서법과 양태에 관한 연구 업적들이 십인십색의 모습을 보여 왔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가. 서법과 양태의 개념 규정의 모호성, 즉 서법과 양태의 개념 영역 및 그 두 범주를 각각 문법범주와 의미범주로 볼 것인가에 관한 의견 불일치
- 나. 전통문법적인 개념인 문체법(문장종결법)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의견 불일치
- 다. 문법범주로 실현되는 서법이나 양태의 형태소들을 종결어미니 선어미니 하는 문법의 다른 맥락에서 분류된 자연 부류에 맞추고자 하는 태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부족
- 라. 서법과 양태를 의미에 입각하여 범언어적인 관점에서 체계화할 것인지

* 서울대 강사

1) 논리 의미론의 전통을 따른 논의에서는 국어학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 ‘서법, 양태’를 각각 ‘법(法), 양상(樣相)’으로 주로 번역해 왔다.

국어 문법 내에서 체계화할 것인지에 관한 반성의 부족

이 글은 (1)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 연구를 검토한 후 국어에서는 서법범주 설정의 필요성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문법범주로서의 양태법의 체계적인 분류를 행하고자 한다.

2. 서법과 양태의 개념

Jespersen(1924:313-321)에서는 서법을 “화자가 문장의 내용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의 태도가 일정한 활용형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고 양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Lyons(1968:307-309)는 서법을 “화자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 관한 태도”라고 정의하고, 평서법, 명령법, 의문법과 같은 문장 종결법과 의도·바람, 필연·의무, 가능성·확실성 등을 드러내는 문법범주를 모두 서법의 이름으로 포괄하고 있다. 직설법, 가정법, 기원법 등의 동사적 서법(verbal mood)과 평서법, 명령법, 의문법 등의 통사적 서법(syntactic mood)을 설정한 Hausser(1980:93)도 기본적으로 Lyons(1968)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서법과 양태 모두를 인식한 논의에서 가장 대립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이효상(1991)과 서정수(1995)이다. 서정수(1995:297)가 서법을 “문장의 내용에 대하여 지니는 말할이의 정신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범주”로 규정하여 Lyons(1968)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반면 이효상(1991:60)은 양태를 상황의 내재적 부문이 아닌 상황에 대한 화자의 평가로 규정한다. 화자의 평가는 경험적 부문과 수행적 부문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화자의 경험/지각, 증거적 출처, 기존 지식과의 관계, 경험/지각이 지식 체계에 통합되는 방법(인식론적 과정) 등을 가리키고 후자는 화행에서 화자가 다양한 상황을 표현하는 명제적 내용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서법은 매우 주변적이고 특수한 개념으로서(‘-나-’, ‘-시-’만을 서법범주로 인정함) 거의 문법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와 반면에 서정수(1995)에서는 ‘양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²⁾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제외하고는, 많은 논의(고영근 1986, Lyons 1977, Bybee 1985, Bybee et al. 1994, Palmer 1986, 신창순 1997, 김지은 1998)가 대체로 “서법은 화자가 사태와 대결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수적 의미가 일정한 동사의 형태로 구현되는 문법범주이고, 양태는 서법범주나 기타 어휘적 수단에 의해 나타나는 부수적인 의미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범주(고영근 1995:250)”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7편의 논저들에서도 서법과 양태의 개념 영역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Bybee(1985: 170)에서는 화행적인 문체법이 서법의 영역에 포함되는 반면에 다른 논의에서는 제외되고 있고, 오히려 위 7편의 논저에 포함되지 않는 고영근(1965, 1976)에서 서법을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로 표현될 수 있는 문법범주라고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Bybee(1985)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Lyons(1977:848)에서는 동사의 굴절형에 의한 문법범주만을 서법으로 규정하여 다시 Jespersen(1924)의 전통으로 돌아감으로써 Lyons(1968)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또 Bybee(1985:170)는 어떤 언어에서 발화수반력을(illocutionary force)³⁾이 동사의 굴절에 의해 표현됨에 주목하여 발화수반력을 서법범주에 포함시키는 반면 Lyons(1977)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무시하여 발화수반력을 서법범주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만 보면 둘 모두 서법을 동사의 굴절로 표시되는 문법범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법과 양태에 대하여 다양한 이견이 있음을 마찬가지이다. 곧 선어말어미의 굴절만을 서법범주로 설정하는 논의(고영근 1986)는 Lyons(1977)의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모든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로 표현되는 문법범주를 모두 서법범주로 설정하는 논의(서정수 1995)는 Bybee(1985)의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서다가 선어말어

2) 서정수(1990:302)에서는 modality를 ‘서법적 의미’로 번역하고 있다.

3) 용어 사용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발화수반력’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사실 이 용어는 국어의 일반적인 조어법에 비추어 볼 때, 그리 마땅치 않다. 국어에서는 ‘X Y-력’을 보통 ‘X를 Y하는 힘’으로 해석하기 때문에(예: 물질 분해력), ‘발화가 수반하는 수행적 힘’이라는 뜻으로 ‘발화수반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색한 것이다. 한편 또 다른 번역어인 ‘언표 내적 효력’은 생경한 한자어를 급조한 느낌이 듈다.

미를 제외하고 종결어미에 의한 문체법만을 서법범주로 설정하는 논의(안병희 1965)까지 고려한다면 국어에서의 이견이 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법과 문장종결법을 언어 형식으로 구분해 보려는 시도도 적지 않다. 이지양(1990)과 윤석민(1999)은 어말어미(종결어미)⁴⁾에 의해 실현되는 문법범주를 문장종결법으로, 선어말어미에 실현되는 문법범주를 서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 논의에서도 양태는 의미범주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에 장경희(1985)는 개연성, 가능성, 확실성 등의 의미를 양태로 부르고 진술, 의문 등의 문체법을 서법으로 부른 바 있는 Halliday(1970)의 영향을 받은 듯하여 대체로 문체법을 별도의 문법범주로 보고 개연성, 가능성, 확실성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범주를 양태로 본다. 그런데 장경희(1999)에 가면 통보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이 바뀌었을 뿐 형태소를 최대한으로 미분하는 방법론을 따라 이러한 구분을 더욱 철저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⁵⁾ 이러한 태도는 이희승(1949), 안병희(1965) 등의 전통문법적인 설명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장경희(1985, 1999)에서의 양태의 개념은 의미범주가 문법범주로 실현된 것으로서 양자 모두에 걸쳐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는 어떤 양태들이 굴절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하여는 범언어적으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법을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던 Bybee(1985:169)와는 반대되는 태도이다.⁶⁾ 이처럼 서법과 양태의 개념과 그 영역 및 상관관계에 관한 인식은 연구자들마다 천차만별이다.⁷⁾

4) 일반적으로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는 문장종결법은 물론이고 서법이나 양태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를 언급하는 맥락에서는 어말어미와 종결어미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논의에 따라 선어말어미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법도 있음을 물론이거나 실상은 연결어미에 의해서도 양태성이 표현되는 일이 더러 있다.(후술)

5) 장경희(1999:264)에서는 기존의 ‘문장종결법’ 대신에 허웅(1975:486)의 용어인 ‘의향법’을 쓰고 있다. 장경희(1985, 1999)는 적극적으로 서법을 문법범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6) 그러나 Bybee(1985)는 마지못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장경희(1985)는 더 적극적인 인상을 준다.

7) 서정수(1995:298)에 따르면 인식적 서법은 주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서법으로 규

먼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양태라는 것을 밝혀 둔다. 왜냐하면 위의 여러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법범주로서의 서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 데 반해 양태는 그것을 의미범주로만 설정하건 문법범주로까지 인정하건 모든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윤석민(1998:366-368)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종결어미로 나타나는 문법범주는 문장종결법이고 선어말어미로 나타나는 문법범주는 서법이다. 또 그는 문장종결법과 서법이 표현하는 의미 모두를 ‘양태’(물론 두 가지 양태는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함)로 보고 있는데, 서법과 문장종결법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공통점인 ‘화자의 인식 태도’에 대한 적절한 범주 설정이 없다.⁸⁾ 이는 문법적 구분을 개념 영역의 구분보다 앞에 두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양태를 의미범주로, 서법을 문법범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모종의 의미가 문법적으로 실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 어떤 형태가 어떤 의미를 실현하느냐 하는 것보다 인식론적으로 우선하므로,⁹⁾ 우

정되는데, 김지은(1998:2.1.1.)에서는 화자 지향 양태(speaker-oriented modality)로 이해한다. 사실 인식양태는 그동안 전형적인 화자 지향 양태로 이해되어 왔으므로 서정수(1995)의 이해 방식은 다소 기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학계에서 양태 및 서법의 개념에 관한 합의된 의견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할 만하다.

8) 장경희(1999:263)에서도 통보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의 영역이 논리 인식론적으로 뚜렷이 구별됨을 근거로 하여 그 둘의 공통점을 버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아직 뚜렷한 반론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문법론적으로 통보적 태도의 범주와 인지적 태도의 범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미론적 공통성이 무시될 만큼 강력한 논거는 아니라는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관점의 차이로 귀결되는 문제인 듯하다.

9) Pinker(1994:3장)에서 완전히 허구로 밝혀진 Sapir-Whorf 가설의 강한 입장(언어결정론)은 우리의 입장과 완전히 반대된다. 곧 어떤 언어 형식이 없으면 그에 해당하는 개념이 해당 화자의 머릿속에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예컨대 주체경어법의 ‘-시-’와 같은 형태가 없는 언어의 화자는 국어의 ‘-시-’가 갖고 있는 개념을 머릿속에 갖게 되는 것이 우연적이고 어쩌면 미국 사회와 같은 곳에서는 화용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미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미(개념)의 문법적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양태 문제를 접근하도록 한다.

리는 양태의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서법의 개념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의미범주로서의 양태¹⁰⁾란 무엇인가? 여기서 여러 정의들을 세밀하게 비교할 필요는 느끼지 않지만 여러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뽑아낸 일반적인 정의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화자가 명제 내용에 관해 갖는 심리적(정신적) 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정의에서 조건이 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때, (2가)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2나)와 (2다)는 근본부터 차근차근 그 의미를 곱씹어 볼 가치가 있다.

- (2) 가. 화자
 - 나. 명제 내용에 관한 것
 - 다. 심리적 태도

우선 유개념인 (2다)에서부터 출발을 해 보자. 심리적 태도는 다음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타인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맥락에서 명제 내용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청자에게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화행범주로 부르건(Searl 1969), 통보적 태도의 범주로 부르건(장경희 1999), 의향법으로 부르건(허웅 1975), 문체법으로 부르건(고영근 1976) 그것은 단순히 용어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문장종결법이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부터는 외연이 달라진다. 윤석민(1999:364)에서는 문장종결법의 세 가지 조건으로서 (i) 문법형태에 의해 수행될 것, (ii) 문장종결법을 표시하는 형태의 쓰임이 필수적일 것, (iii) 문장종결법을 수행하는 형태의 실현 방식이 일정할 것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과거 그 종류의 수와 범주 설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보여 왔던 문장종결법을 ‘설명법, 감탄법, 약속법, 의문법, 명령법, 허락법, 경계법, 공동법’의 8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분명 (i)-(iii)은 상당히 논리성이 있는 기준으로서 문장종결법의 개념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문장종결법은 종결어미를 문법적으로 체계화하는 한 방법임에 유

10) 앞으로 양태란 의미범주와 문법범주를 아우르는 용어로 쓰되 정확히 구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미범주로서 ‘양태성’을 문법범주로서 ‘양태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의한다면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청자에게 일정한 화행을 하려는 통보성이 없는 문장종결법도 있고 화행을 하는 통보성이 있으면서 문장종결법의 형태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후자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는 너에게 100만 원을 줄 것을 약속한다.”와 같은 말에서 ‘약속하다’와 같은 어휘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문법형태를 사용하는 화행은 문장종결법 이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해 통보적 태도가 문법형태로 표현된다면 반드시 문장종결법의 형식을 빌려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감탄법이 해당되므로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문장의 종결 형식을 연구한 궁정적 성과인 (i)-(iii)의 기준을 깨어 감탄법을 문장종결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통보적 의미를 드러내는 양태와 문장종결법은 분리해서 인식해야 마땅하다. 즉 감탄형 종결어미는 문장종결법의 어미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통보적인 양태성을 드러내는 형태소로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의 목적은 의미법주인 양태를 의미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지 다른 맥락에서 설정한 문법적 부류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보적 의미를 드러내는 양태를 통보양태(communicative modality)라고 부르기로 한다.

둘째, 화자가 어떤 명제에 대하여 자신의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인식의 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보여 주려는 의식이다.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양태법주로 인식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반론의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를 전통에 따라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로 부르기로 한다.

셋째, 화자 자신의 정감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도 양태로 보아야 한다. 사실 명제 내용에 대한 심리적 태도라는 말이 이 정감적 태도만큼 말뜻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없다. 고영근(1981, 1986) 등에서는 정감성을 드러내는 서법 형태소나 양태 표현을 보이고 있는데, 국어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이라고 할 만하다. 이를 정감양태(emotive modality)라고 부르기로 한다.¹¹⁾

11) ‘정감’이라는 말과 ‘평가’라는 말이 어휘의미론적으로 구별될지는 모르나, 정감양태는 Palmer(1986)에서의 평가양태(evaluative modality)와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 우리가 ‘평가’를 버리고 ‘정감’을 채택한 이유는 국어적인 직관으로 볼 때 ‘평가’는 객관성을 지향하고 감정을 드러내려는 태도를 배제하려는 관습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넷째, 이른바 ‘의무양태(deontic modality)’로도 화자의 심리적, 정신적 태도가 드러날 수 있다. 의무양태는 화자가 주어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주어의 의도(의지), 희망, 의무, 당위, 능력 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명제 내용에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의무 양태는 행위자 지향 양태(agent-oriented modality)로 이해되어 오기도 했다(Bybee 1985:166). 그러나 Bybee et al.(1994:177)에서는 인식양태로 처리될 만한 의미들의 통시적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종래에 양태로 고려되지 않았던 행위자 지향 양태를 양태 논의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영어의 조동사들은 ‘의무양태 → 근원가능성(root possibility) → 인식양태 혹은 화자 지향 양태’를 드러내는 요소로 발전했는데(Bybee et al. 1994:6장), 공시적인 현대영어에서도 같은 조동사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고 이 의미들은 역사적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의무양태’를 양태법 논의 속에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다.

의무양태의 대표적 형태로서,¹²⁾ 현대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의 ‘-어야지, -어야’를 예로 들 수 있다.¹³⁾ (3나)에서는 [결심]의 의미가 느껴지는데, 이는 1인칭 주어를 가진 독백문에서 의무양태성을 표현하는 한 방식으로 이해된다.

때문이다. 한편 Palmer(1986:119)에서는 평가법을 일단 의무양태에 포함시켰으면서도 엄밀한 의미의 양태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한 태도는 양태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Palmer(1986)의 체계는 명제에 대한 인식적 태도를 나타내는 ‘인식양태’와 주어에 대한 조건 부과의 ‘의무양태’(후술)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화자의 심리적, 정신적 태도를 드러내는 형태소 전반을 포괄하려는 우리의 논의와는 그 출발점부터 다르다.

12) 중세국어의 ‘-오-’가 의도법(Volitive)의 형태소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만약 그것이 의도법의 형태소라면 의무양태 속에 포함하여 논의할 수 있다(Palmer 1986:97).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의도법 자체는 의무양태가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아래의 ‘-려고’ 등이 의무양태소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와 같다. 그러나 평서형의 ‘-오-’는 인정 제야이 있었으므로 의무 양태에 포함시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13) ‘-어야지’의 의무양태성에 대해서는 박재연(1998:122)을, ‘-어야’의 의무양태성에 대해서는 이선웅(1995:50-51)을 참고하기 바란다.

- (3) 가. {너/철수}도 이제 장가 가야지.¹⁴⁾
 나. 나는 이제 집이나 가야지.
 다. 너는 이번엔 꼭 합격해야 한다.
 라. 이번에는 합격하려고 큰맘 먹고 절에 들어갔어요.
 라'. 철수는 이번에는 합격하려고 큰맘 먹고 절에 들어갔다.

언뜻 보기에는 (3라)에 쓰인 ‘-려고’도 화자가 주어의 행동에 어떤 조건을 부과하므로 의무양태소인 것처럼 보인다(고영근 1986 참조). 그러나 (3라')에서 보듯이 다른 인칭의 주어를 쓰면, 화자가 주어에게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전혀 찾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어야지, -어야’가 주어의 인칭에 관계없이 화자의 의도를 주어의 행동 조건으로 삼으려는 일과 대조된다. 따라서 ‘-려고’는 의무양태소로 볼 수 없다. ‘-려, -고자’도 마찬가지로 이해되는데, 이들은 단순히 주어의 의도나 목적을 드러내는 형태소이지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의무양태가 비록 명제의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주어에 대한 어떠한 조건을 부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단순히 명제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양태법 논의에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의무양태에 관한 논의에서도 화자의 정신적 태도를 드러낸다는 양태 고유의 의미는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컨대 영어에서 능력의 ‘can’은 대체로 의무양태 속에서 논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화자의 정신적 태도와는 별 관련이 없다. 영어의 의무양태법 논의에서는 ‘주어에 대한 조건 부과’가 ‘화자의 정신적 태도’에 우선하는데,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양태조동사들의 의미적 연관성과 역사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주어에 대한 조건 부과’를 앞세우는 편이 체계적인 설명을 행하기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그러한 함축이 없다.

말하자면 우리는 머리말에서 언급했던 (1라)의 문제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관점을 세운 셈이 되는데, 국어의 양태법 체계를 세우는 것이 문제에 올

14) 박재연(1998:122)에서는 이러한 예문을 놓치고 있다. 그 논의에서는 ‘-어야지’가 ‘-르게’와 마찬가지로 1인칭 주어만을 가지고 약속문에서만 사용된다고 하고 있다.

바로 접근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우리는 Palmer(1986:95)에서 보인 범언어적인 인식양태법 체계가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¹⁵⁾ 그의 그림은 국어 인식양태 논의에서 의미론적인 참고 정도로만 활용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다른 예를 갖고 말하건대, 크게 주체경어법, 상대경어법, 객체경어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어의 경어법 체계와 주체경어법과 객체경어법이 하나의 문법범주로 실현되고 상대경어법이 따로 실현되는 것으로 가정된 언어 X의 경어법 체계를 어떻게 한 체계에 넣을 수 있겠는가? 분류나 나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체계'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의미범주가 문법범주로 실현되는 문제에는 언어에 따라 어떤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조건 (2나)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근본적으로 '양태법'을 화자의 정신적, 심리적 태도가 문법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심리적 작용이 어디에 작용하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가장 전통적인 의미에서 '양태'는 명제에 작용하는 화자의 정신적 태도로 여겨져 왔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명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문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언어논리학에서 숙제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i) 거짓이거나 참인 것, (ii) 인식되거나 믿어지거나 의심될 수 있는 것, (iii) 단언되거나 부정되거나 물어질 수 있는 것, (iv)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변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Lyons 1995:141).

그러나 양태성이 명제 내용에만 미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선 명제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으면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요소 중에 명제 전체에 작용하지 않고 한 성분에만 작용하는 것이 있다. 명제가 표현하는 사태의 진리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는 분명 명제 내용 이외의 요소인데 그 작용역은 한 성분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버지가 키가 크시다.”에서의 ‘-시-’는 분명히 아버지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쓰인 것이지 ‘아버지가 키가 큰 사실’을 높이려는 것은 아니다. 둘째, 양태가 명제 이상의 단

15) Palmer 자신도 그림의 제목을 'Epistemic modality: a possible typological system'이라고 함으로써 실재하는 체계는 아님을 보이고 있다.

위에 작용할 경우가 있다. 예컨대 “곧 비가 오겠다.”와 같은 문장에서 화자의 통보적 태도는 ‘비가 올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실’을 단언하는 데에서 드러난다. ‘-겠-’이 표현하는 인식양태의 의미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면 윤석민(1998:366)에서처럼 문장종결법과 서법이 분명히 구분된다. 하지만 동사어간에 붙는 것을 선어말어미, ‘동사어간 + 선어말어미’의 구조체에 붙는 것을 어말어미라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임을 고려한다면 ‘어미’라는 공통점을 추출하듯이 ‘화자의 심리적 태도’라는 공통점을 추출하는 것이 부당한 주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양태는 그 작용역이 명제 이하일 수도 명제 이상일 수도 있는 것으로서 명제의 내용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양태를 “화자가 명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 문장 내에서 표현하는 심리적, 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하도록 한다.

3. 국어의 양태법 체계

양태성이 실현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 구성이 일정한 양태성을 가질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양태성은 어휘형태에 의해서도, 문법형태에 의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 그 구성 전체가 양태성을 갖게 되는 것은 주로 관용구에서 보인다. “너 잘났다.”, “꼴 좋다.”,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따위의 문장에서 화자의 정감적 태도가 드러나는데, 이는 완전히 의미론의 연구 과제이다. 한편 “네 애비 이름이 뭐야?”, “그가 1등 할 것이 확실하다.”, “아마 그는 안 올 것이다.”, “네가 1등을 했다니 정말 놀랐다.”와 같은 말에서는 어휘 항목인 ‘애비, 확실하다, 아마, 놀라다’가 관련 대상이나 명제에 양태성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어휘 항목의 양태성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과제라고 할 만한 것으로서 문법론의 연구 대상이라기보다는 어휘의미론의 연구 대상이다. 양태성을 드러내는 형태 중 문법형태에 가까운 것으로서 의존용언¹⁶⁾과 의존명사 부류가 있다. 의존용언의 양태성—예를 들어 ‘쌓

16) 이선웅(1995)에서는 편의상 기존 용어인 ‘보조용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

다, 주다'에서 드러나는 양태성—은 어휘적 의미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 이므로(이선웅 1995:5장), 근본적으로는 역시 어휘의미론에 귀속된다. 또 의존명사의 양태성—예를 들어 ‘척, 뻔’에서 드러나는 양태성—도 역시 해당 어휘의 의미 문제라고 여겨진다. 곧 양태법에 관한 우리의 연구는 문법형태인 조사, 어미에만 한정한다.¹⁷⁾ 그러나 의존용언, 의존명사 두 부류의 폐쇄집합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문법형태에 준한다고 보아 문법론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입장도 가능하다. 중간적 성질을 가진 항목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문법 영역이 달리 설정될 수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¹⁸⁾

국어의 양태의 체계를 설명하기 전에 양태가 무엇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정신적 태도를 드러내는지도 잠시 언급해야 할 것이다. Jakobson(1960:353)에 따르면 발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발신자(addresser), 수신자(addressee), 텍스트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context)¹⁹⁾, 전언 내용 자체(message), 접촉 상황(contact), 언어 부호(code)로 요약된다. 적어도 국어 양태에서는 발신자, 접촉 상황, 언어 부호에 대해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수신자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양태 요소로는 상대경어법 어미들이 대표적인 예로 거론될 만하다.(후술) 텍스트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양태 요소로는 주체경어법 선어말어미인 ‘-시-’와 존대 절차에 쓰이는 격조사 ‘께서, 께’ 등이 있다. 또 ‘마저, 조차, (이)나, (이)나마, (이)야’ 등의 보조사도 그 앞에 통합된 지시체에 대한 화자의 평가 혹은 감정 상태를 드러내고 ‘그려, 그래’ 등의 보

제로 ‘보조용언’ 개념은 해체되었다. 따라서 보조용언은 물론이고 보조용언 구성이 아니면서도 재구조화된 의존용언 구성인 ‘-ㄹ 것이다, -ㄹ 것 같다, -ㄹ 듯하다, -ㄹ 듯싶다, -ㄹ 성싶다, -ㄹ 법하다’ 등 역시 양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7) 문법형태에는 접사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생질, 도둑질’ 등에서 보이는 접미사 ‘-질’이나 ‘대통령님, 장군님’ 등에서의 ‘-님’에서는 정감양태성이 파악된다. 그러나 통사적인 요소가 아닌 접사 부류는 우리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18) 김지은(1998)은 일반 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별하지 않고 양태성을 나타내는 용언 전반을 검토한 업적이다.
- 19) 보통 context는 ‘문맥’으로 번역되지만, Jakobson은 언어 text와 함께(con-) 존재하는 대상, 즉 언어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으로 규정하여 지시체(referent)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다.

조사도 청자에 대한 모종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낸다. 그 외에는 언어가 표현하는 내용 자체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면 이는 상대경어법과 주체경어법을 양태법에 귀속시킨 것이 기준의 전통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다고 할지 모른다. 이에 대해 깊이 더 생각해 보자. 경어법 요소는 화자의 정신적 태도와 무관한가? 그렇지 않다. 기준의 양태법 요소는 화자의 정신적 태도를 표현하는 모든 문법형태소를 포함하였던가? 그렇지 않다. 경어법 요소가 화자의 정신적 태도와 관련된다면 양태법과 교집합을 갖는 관계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 경어법은 양태법의 부분 집합이다. 어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이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가? 그렇지 않다. 특히 문법적으로 두드러지고 체계적인 하위 범주가 있을 수 있다. 경어법은 그러한 범주로서 위치 지어지고 또 이것이 국어의 특징이라고 기술하는 것이 가장 정직할 것이다. 경어법을 양태법 속에 넣어서 무엇을 어찌자는 것이 아니다. 경어법을 양태법 속에 넣어서 얻는 문법 기술상의 이득을 말하라고 하면, 오히려 경어법을 양태법과 무관하다고 하는 문법 기술이 그 효용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반박할 만하다. 국어의 경어법이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확보할 만큼 중요한 문법적 현상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양태범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편 경어법이 완전히 화자의 정신적 태도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고 ‘고정된’ 사회적 관계에 의해 강제되는 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만도 하다. 그러나 우리 논의의 핵심은 어떤 양태성을 전달하는 데에 어떤 형태소를 문법적으로 정형화된 형식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이지, 그 형태소의 용례가 아니다. 상대경어법을 쓸 때에는 ‘이 사람을 대우하여야 하는데 어떤 정도로 대우하여야 하는가?’ 이 사람과 나의 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이 형태소를 쓰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올바른 대우이다.’라고 생각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신적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 높이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습니다’를 쓰는 일 등이 있음을 중시하여 상대경어법이 화자의 정신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용상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의 관심은 문법적으로 부호화(encoding)되는 방식에 있다.

양태의 하위 영역이 갖는 의미 자질의 대립 관계를 생각하여 정감 양태

의 다른 영역에서는 [감탄]이나 [후회] 등의 비체계적인 의미를 설정하고 경어법 양태에서는 [아주 높임], [보통 높임] 등의 체계적인 의미를 설정하는 일은 문법 기술의 일관성을 해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는 비교적 체계적이어서 상대에 대한 대우의 감정도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감정은 그 근본까지 탐구하는 것이 아닌 한 비체계적이어서 다른 양태성은 비체계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 그리 이상할 것은 없다. 상대높임이라는 양태성이 표현되지 않는 언어도 많지만,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와 같이 그것이 표현되는 언어에서는 체계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어 양태의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된다.²⁰⁾

| 양태 유형 | 표현 수단 | 해당 형태소 | |
|-------|-------|------------------------------------|---|
| 통보양태 | 종결어미 | [설명] -습니다, -다, -어, -오/소, -단다 등 | |
| | | [약속] -마, -(으)ㅁ새 | |
| | | [의문] -습니까/-ㅂ니까, -냐, -니, -어, -오/소 등 | |
| | | [명령] -아라, -어, -게, -오, -십시오 등 | |
| | | [허락] -럼, -려무나 | |
| | | [경계] -근라 | |
| | | [청유] -자, -ㅂ시다 | |
| 인식양태 | 종결어미 | -구나, -군, -거든, -네, -지 | |
| | 선어말어미 | -겠-, -더-, -리- | |
| 정감양태 | 격조사 | 명제 이외의 요소에 대한 것 | 께서, 깨[주체 높임] |
| | 종결어미 | | -습니다, -마, -자, -럼, -어, -단다, -어, -지, -네, -군, -다니까, -어야지 등[여러 등급의 상대높임] |
| | 선어말어미 | | -시-[주체 높임] |
| | 보조사 | | 요[상대에 대한 비격식적 높임], 조차, 마 저, 까지, (이)나, (이)나마, (이)야, 그려, 그래 등 |
| | 연결어미 | | -ㅂ시고, -기로(서니) |
| | 종결어미 | 명제에 대한 것 | -근걸[후회], -단다[친근함], -지(독백) [기원], -구내[감탄] 등 |
| 의무양태 | 종결어미 | | -어야지 |
| | 연결어미 | | -어야 |

20) 필요에 따라서 [] 속에 해당 양태성을 밝힌 것도 있다.

이 표는 기존 전통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낮설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우선 ‘-습니다’가 통보양태와 정감양태에 모두 속함을 주목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상대경어법 종결어미는 통보적 태도와 상대에 대한 정감적 태도를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장치이다.²¹⁾ 그렇다면 반말체 종결어미는 어떠한가? 반말체 종결어미는 상대경어법의 무표적 실현(박재연 1998:25)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격식적인 상대경어법의 등급으로 설정될 수 없을 뿐 특정한 범위의 대우 의식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역시 상대를 어떠어떠하게 대우하여야겠다는 화자의 심리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감탄형 어미를 제외한 모든 종결어미는 통보양태와 상대경어의 정감양태를 드러내는 형태소로 볼 수 있다.²²⁾ 한편 ‘-다니까, -다면서’ 등의 형식은 원래 ‘-다고 하니까, -라고 하면서’의 비환원적 융합형²³⁾인데, 이들은 이미 평서형 종결어미라고 보아야 한다(노용균 1984). ‘-다니까, -다면서’는 통보적으로는 [설명]의 의미만 갖지만,²⁴⁾ 정감적으로는 다양한 수행억양과 함께 각각 [짜증스러움], [놀라움] 정도의 정감적 의미를 덧붙인다. 그러나 이들의 정감적 의미는 완전히 고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특수한 문맥에서 도출되는 화용적 용법으로 설명되어야 한다.²⁵⁾

[설명], [의문], [명령]의 통보양태에 ‘-어’를 예로 보였는데, 반말체 종결어미 혹은 그에 ‘요’가 통합된 형태가 화자의 통보적 태도를 드러냄에 있어 수행억양에 의존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임홍빈 1984). 우리는 임

21) 시정곤(1992)에서도 같은 종결 어미를 서법과 겸칭(謙稱)을 동시에 드러내는 M(modality) 범주로 처리하고 있다.

22) 감탄형 어미는 화자의 [감탄]이라는 다른 종류의 정감성을 드러낸다.

23) 환원적 융합형과 비환원적 융합형에 대해서는 안명철(1992:4장) 참조.

24) 박재연(2000)에 따르면 ‘-ㄴ니까, -ㄹ니까, -자니까’가 쓰인 발화는 차례로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인 원발화에 대한 해석으로서, 그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 평서문의 성격을 가진다.

25) 박재연(2000)에서도 Sperber & Wilson(1994)의 이론 체계를 수용하여 이들의 정감적 의미는 인용 구문의 “해석적 용법(interpretive use)”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들은 언제나 인용 구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단다, -다지’처럼 인용적 용법을 완전히 상실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는 말과는 구별된다(박재연 1998:34-35).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단다’의 정감 양태적인 의미인 [친근함/다정함]은 완전히 문법화된 것으로 보아 정감 양태에 포함시켰다.

홍빈(1984)의 주장에 따라 ‘-어’는 모종의 수행역양이 염하는 조건하에서 보문소이자 반말체종결어미로 기능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의 표에서 ‘-어’를 그냥 [설명], [의문], [명령]의 통보양태에 각각 배치한 일은 수행역양이 염한—그리하여 문자로는 표시할 수 없는—각각 다른 ‘-어’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문법적 부호화 단계까지는 같은 형태소였던 것이 음운론적 부호화를 거친 실제 발화 단계에서는 다른 형태소로 기능한다는 것이다.²⁶⁾

큰 테두리에서 생기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개별 형태소에 관한 양태 의미 기술만이 남는다. 우선 경계법 어미의 ‘-ㄹ라’를 살펴보자. 이 형태소를 통해 화자가 청자에 대해 드러내고자 하는 통보적 태도는 청자에게 [경계(警戒)]하는 의미이다. 그와 동시에 화자는 자신의 [염려스러움]을 드러낸다. 한편 [허락]의 ‘-럼, -려무나’는 [친근한 감정]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이 둘은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르다. 우리는 [염려스러움]은 [경계]의 전제(presupposition)가 되는 의미로서 서로 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반면 [친근한 감정]은 [허락]의 전제가 될 수 없어 서로 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예컨대 화자가 청자가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을 계속 말리다가 청자가 듣지 않자 “그럼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라고 내뱉듯이 말할 수 있다. 따라서 ‘-ㄹ라’는 통보양태소이면서 정감양태소이지만 ‘-럼, -려무나’는 정감양태소가 될 수 없다.

인식양태법에서 ‘-구나’, ‘-네’에는 [새로 諦]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감탄](많은 경우 [놀라움]과 같은 의미를 동반함)과 같은 양태성을 표현하는 정감양태소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구나’와 곧잘 비교되는 ‘-군’은 [감탄] 혹은 [놀라움]과 같은 감정을 드러낼 때에는 쓰지 않으므로 정감양태소로 보기 어렵다. ‘-군’은 화자의 인식 속에서 추론할 수 있는—그리하여 놀랍지 않은—사태를 처음 알고 표현할 때 쓰이므로 순수한 인식양태 소라고 할 만하다.²⁷⁾ 한편 이효상(1991:424-433)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의 ‘-라’를 内省(Introspective)의 양태소로 처리하였다.

26) 송원용(1998:14-15)에서 이 과정을 잘 요약해 보이고 있다.

27) 이들 인식 양태소의 자세한 의미에 관하여는 장경희(1985, 1999), 박재연(1998, 199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략의 의미만을 보이기로 한다.

(4) 가. A: 자네 전공이 뭔가?

B: 고고학입니다.

A: 음, 전공이 고고학이라 흔치 않은 걸 하는군.

나. 내일 가리라.

다. 이름이 뭐였더라?

라. 아이구, 놀래라.

이효상(1991)의 위와 같은 처리는 두 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4가-4다)에서의 ‘-라’와 (4라)에서의 ‘-라’는 서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가-4다)에서의 ‘-라’는 각각 ‘이-’, ‘-리-’, ‘-더-’ 뒤에서 ‘-다’가 이형태로 실현된 것이지만, (3라)의 ‘-라’는 감탄형 종결어미 ‘-아라’의 일부이다. 둘째, [내성]이라는 공통적인 양태성 자체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4나)에서 화자의 [다침]이 느껴진다고 해서 이를 혼자 곱씹어 생각하는 (4가)에서의 [내성]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4라)의 ‘-아라’는 더욱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따라서 이효상(1991)이 분석한 [내성]의 ‘-라’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것이다.

(4가)에서 [내성]과 같은 정감양태성이 느껴지게 하는 것은 수행억양이다. 이는 (4가)의 “전공이 고고학이라”는 “고고학을 전공한다”처럼 말해도 맨 뒤의 종결어미에 똑같은 수행억양만 없으면 같은 정감성이 파악됨을 볼 때 분명한 사실이다.

(5) 가. (아이가 자랑하는 말투로) 나 오늘 상 받았다.(↗)

나. A: 방 안에서 아버님 소리가 났다.

B: 방 안에서 아버님 소리가 났다?

다. A: 너는 집에 가라. - B: 너는 집에 가라?

라. A: 달이 밝구나! - B: 달이 밝구나?

(5가)에서 [자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종결 어미 ‘-다’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고 수행억양에 의한 것이다. (5나-5라)는 임홍빈(1995:209)에서 그대로 따온 예문이다. 그는 특수한 수행억양에 의해 표현되는 [의문]의 의미 때문에 평서형 종결어미 ‘-다’, 명령형 종결어미 ‘-아라’, 감탄형 종결어미

‘-구나’의 지위를 의심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는 양태 논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형태소의 고유 의미와 관련 없이 수행역양만으로 양태가 결정되는 것은 문법론의 ‘양태법’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러한 처리와 수행역양이 얹힌 반말체 종결어미를 통보양태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상대경어의 정감양태성도 드러낸다고 한 앞서의 처리가 비일관적이라는 비판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말체 종결어미의 형식은 수행역양과 분리할 수 없다. 즉 수행역양이 얹히지 않은 반말체 종결형식은 이미 종결형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임홍빈 1984 참조), (5)에서의 수행역양은 종결형식과 무관하게 순전히 화자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쓰인 잉여적인 요소이므로 구별된다. 다시 말해 이미 (5)에서 쓰인 종결어미는 통보양태소와 상대경어의 정감양태소로 인정될 뿐 잉여적인 수행역양을 근거 삼아 다른 정감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보통 보조사에 포함되어 논의되는 ‘그려, 그래’는 “날씨가 맑습니다그려.”, “날씨가 맑군그래.”와 같이 사용되어 각각 청자에 대한 [친교적인 확인]과 [명제 내용의 강조]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보조사의 양태성은 채완(1998)에서 간명하고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연결어미 ‘-ㅂ시고’는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에도 실려 있지 않은 형태소이다.²⁸⁾ 이 형태소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²⁹⁾ 여러 형태소의 융합형임은 분명해 보인다.

- (6) 가. 공부를 한답시고 하는 게 책만 떴다 덮었다 한다.
 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책만 떴다 덮었다 한다.
 나. 선배랍시고 목에 힘 주고 다닌다.
 나’. 선배라고 목에 힘 주고 다닌다.
 다. 오늘 집들이를 한다고 야단법석이네요.
 라. 스승의 날이라고 학생들이 선물을 보내 왔어요.

2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은 ‘-답시고’, ‘-람시고’를 신고 있으나(‘-잠시고’는 없다), 이는 형태소를 잘못 분석한 것이다.

29) 이 형태소에 들어 있는 ‘-시-’가 원래 주체경어 선어말어미인 ‘-시-’인지도 잘 알 수 없고, 음소 ‘ㅂ’의 정체도 잘 알 수 없다. 다른 논의를 기다릴 뿐이다.

(6가', 6나')에서 보듯이 '-다고/-라고'는 어떤 행위의 이유나 명분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형태소가 [비아냥/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형태 소가 아님은 (6다, 6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공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용 형식에서 비환원적 융합형으로 만들어진 '-다고/-라고'에 '-ㅂ시-'가 개재하면 어떤 행위에 대한 [비아냥/경멸]의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ㅂ시-'라는 선어말어미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ㅂ시고' 전체를 인용 형식에서 유래한 특수한 융합형으로서의 연결어미로 취급하기로 한다.³⁰⁾ 한편 '-기로(서니)'는 선행절에서 밝힌 이유에서 비롯된 어떤 행위가 부당하다고 평가할 때 쓰이는데,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감정을 드러낸다.

선어말어미에 의해 표현되는 양태성은 인식양태이다. 그러나 선어말어미가 인식양태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³¹⁾ 통보양태를 표현하는 것은 종결 어미이다. 그러나 종결어미가 통보양태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법적 범주와 어떤 개념적(의미적) 범주가 주로 연관된다고 하여 그것을 자연 부류로 묶는 일은 언어학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혼란 오류이고 이것이 머리말에서 제기한 문제의식 (1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다.

이상의 논의가 정당하다면 국어에는 '서법'이라는 말이 설 자리는 없게 된다. 이전에 '(통사적) 서법'이라고 하였던 것은 '통보양태법'으로 대치할 수 있고, 의미범주인 '양태'에 대응되는 문법범주로서 사용하던 것은 '양태법'으로 대치할 수 있다. 만약 관습상 '서법'이라는 용어를 버리기 어렵다면

30) 만약 '-답시고, -랍시고, -狎시고' 등을 '*-다 합시고, *-라 합시고, *-자 합시고' 등에서 융합된 형식이라고 가정하면 "인용보문 다음에 오는 '-ㅂ시고'는 특수하게 인용 동사 '하-'에만 붙는 제약을 가진 연결어미 '-ㅂ시고'와 보문 사이에서 인용동사 '하-'가 탈락한 형식이다."라고 서술하는 편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

31)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등에서 쓰이는 '-겠-'은 [주관적 추측]이라는 인식 양태를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겸손함] 혹은 다소 어색하고 무안한 상황에서 [완곡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동훈(2000)에서는 '-게 되엇-'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중세국어의 '-게 헛엿-'이 모종의 음운론적 융합의 과정을 거쳐 '-겠-'으로 되는 과정에서 '예정>의지>미래>추측'의 의미가 발달하였다고 하고, 위와 같은 특수한 용법 역시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그 의미의 혼적을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문제는 공시적인 접근을 피하느냐 통시적인 접근을 피하느냐에 따라 기술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더 이상의 상론은 하지 않는다.

양태법을 서법(mood)으로 생각하여도 별 문제는 없다. 기왕에도 양태는 의미범주, 서법은 문법범주로 규정해 온 전통이 있으니 양태성은 의미범주, 서법은 문법범주로 하는 용어는 그대로 두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법’이라는 용어는 완전히 폐기되어도 좋은 것이다. 잠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주체존대 : 주체존대법’, ‘객체존대 : 객체존대법’에서 보듯이 ‘의미범주 : 문법범주’의 용어로는 ‘ $X : X\text{-법}$ ’으로 이름 붙이는 것이 알기 쉽다. ‘시간(time) : 시제(tense)’, ‘셈(enumeration) : 수(number)’에서는 문법범주와 의미범주의 명칭이 ‘ $X : X\text{-법}$ ’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시제’니 ‘수’니 하는 말도 원래부터 ‘시간법, 셈법’ 등으로 표현하여도 무방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관습적 용어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제’와 ‘수’는 통일된 개념으로 사용되므로 굳이 ‘시간법, 셈법’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 반면 ‘서법’은 그렇지 못하므로 폐기되어도 좋을 것이다. 먼저 생긴 용어인 ‘서법’을 먼저 쓰고 그 후에 ‘양태’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연구사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태 및 서법에 관련된 논의는 사이비 문제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 느낌이 있다. 양태범주의 용어로는 ‘양태성’과 ‘양태법’이 알기 쉽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체계에는 양태법 속에 종결어미,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격조사, 보조사 등이 섞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머리말의 문제의식 (1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데, 설정 배경이 다른 자연 부류를 서로 억지로 맞추려는 노력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³²⁾

4. 결론

이상으로 우리는 양태를 양태성과 양태법의 측면에서 체계화하는 작업을

32) 이선웅(1995:4.2.1.) 참조. 윤석민(1999:370)에서는 한긴 문장에서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공동법의 네 가지 모습만을 보이는 사실이 문장 종결법 체계를 설정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행하였는데, 이 역시 필자의 주장과 철학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해 왔다. 필자에게 본고는 두 가지 아쉬운 점을 남긴다. 하나는 양태법을 실현하는 양태소들을 모두 보이면서 해당 범주에 소속시키는 타당성을 보이고 그 의미를 철저히 구명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 단지 몇몇 형태소의 예만을 보여 주는 데 그쳤다는 것인데, 이는 양태 체계를 세우는 거시적 작업이 주목적인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소한 범주의 대표성은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떤 문법형태소를 상정하더라도 필자가 세운 체계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일관된 의미적 기준하에서 분류하기가 어려운 인식양태소는 그만두고서라도 정감양태소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하위 분류의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남은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방법론을 제외하고 이 글에서 논의한 바를 아래에 간단히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a) 양태는 “화자가 명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 문장 내에서 표현하는 심리적, 정신적 태도”로 정의한다. ‘양태’는 의미적 개념의 용어인 ‘양태성’과 문법적 개념의 용어인 ‘양태법’을 아우른다.

(b) 국어의 ‘양태성’은 문법형태인 어말어미(종결어미,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조사(격조사, 보조사) 등 다양한 형식을 빌려 표현된다.

(c) 국어의 ‘양태법’은 통보양태법, 인식양태법, 정감양태법, 의무양태법으로 나뉜다.

(d) 반말체 종결어미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필수불가결한 수행역양은 그것이 얹힌 반말체 종결어미와 함께 특정한 양태성을 표현하여 양태법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적인 수행역양은 양태법과 무관하다.

(e) 기존의 ‘서법’은 ‘양태법’이나 ‘통보양태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개념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1965), 「현대국어의 서법체계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5.
- _____ (1976), 「현대국어의 문체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2-1.
- _____ (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 _____ (1986), 「서법과 양태의 상관관계」, 『국어학신연구』(약천김민수교수화갑기념)
- _____ (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조각.
-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노용균(1984), 「국어 의문문의 통사와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연(1998), 「현대국어 반밀체 종결어미 연구」, 『국어연구』 152.
- _____ (1999), 「국어 양태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국어학회.
- _____ (2000), 「-다고'류 어미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 『애산학보』 24, 애산학회.
- 서정수(1995), (수정증보판)『국어문법』, 한양대출판원.
- 송원용(1998), 「활용형의 단어 형성 참여 방식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53.
- 신창순(1997), 「용언토의 분석과 양태범주」, 『국어학』 29, 국어학회.
- 시정근(1992), 「국어의 기능범주에 대하여」, 고영근·성광수·심재기·홍종선 편, 『국어학 연구 백년사』, 일조각.
- 안명철(1992), 「현대국어의 보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병희(1965), 「문법론」, 어문학연구회 편, 『국어학 개론』, 수도출판사.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윤석민(1999), 「문장종결법」,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이선웅(1995),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국어연구』 133.
- 이익섭·채원(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지양(1990), 「서법」,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이효상[Lee Hyo Sang](1991), *Tense, Aspect and Modality*,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이희승(1949), 『초급국어문법』, 박문출판사.
- 임동훈(2001), 「-겠-'의 용법과 그 역사적 해석」, 『국어학』 37.
- 임홍빈(1984), 「문 종결의 논리와 수행역양」, 『말』 9.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 문법론 I』,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 _____(1999), 「서법과 양태」,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채완(1998), 「특수조사」,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삼문화사.
- Bybee, J.-L.(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ybee, J., R. Perkins & W. Pagliuca(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lliday, M. A. K.(1970), Functional Diversity in Languages as seen from a Consideration of Modality and Mood in English, *Foundation of Language* 6.
- Hausser, R. R.(1980), Surface compositionality and the Semantic of Mood, in J. R. Searl et al. eds.(1980), *Speech Act Theory and Pragmatics*, Dordrecht Reidel Publishing Company.
- Jakobson, R.(1960), Concluding Statement: Linguistics and Poetics, in T. A. Seobok eds.(1960), *Style in Language*, The MIT Press.
- Jesperse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이화목·이석무 역(1987), 『문법 철학』, 한신문화사.)
- Lyons, J.(1968),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1977), *Semantics*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1995), *Linguistic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F. R.(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nker, S.(1994), *The Language Instinct*, The MIT Press. (김한영·문미선·신효식 역(1995), 『언어 본능』, 도서출판 그린비.)
- Searl, J. R.(1969), *Speech 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erber, D. & D. Wilson(1986/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2nd edition), Blackwell.